

의정부지방법원 2018. 7. 5 선고 2017가단29118 판결 [영업보증금 반환청구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거상티엔에스

피 고 주식회사 A

변론 종결 2018. 6. 21

판결 선고 2018. 7. 5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5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4. 8. 26. 피고와 사이에 2014. 8. 26.부터 2016. 8. 26.까지 피고로부터 식자재를

공급받는 내용의 계약(이하 '이 사건 식자재 공급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나. 이 사건 식자재 공급계약서(갑 제1호증)의 기재에 의하면,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 금 1억 원을 예치한다고 되어 있다,

다.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B은 2014. 8. 26. 원고에게 1억 원을 정히 영수하였다 는 내용의 보관증(갑 제2호증)을 작성하여 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2, 원고의 청구이 사건 식자재 공급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, 피고에게 지급한 영업보증금 1억 원의 반환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.

3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계훈영